

2022년 방송제작현장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지원 사업 공고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
2022년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
방송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및 교육, 코로나19 전문 방역,
응급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□ 사업개요

- 목 적 : 방송제작 현장 안전사고 예방, 제작사·종사자 등 안전교육 및 응급의료 등 지원을 통해 제작 현장 안전 도모
- 지원대상 :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법인 또는 사업자
- 지원규모 : 총 314,000천원
- 사업기간 : 2022. 3. 15 ~ 11. 30. ※단,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
- 지원분야 : 안전 점검, 응급의료지원, 코로나 방역(소독) 지원 등
- 신청조건
 - 방송(OTT 플랫폼 포함) 송출을 전제로 제작 중인 작품(장르 무관)
 - 신청일 현재 촬영이 시작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지원내용

I	안전점검 및 맞춤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대상)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체 ○ (지원내용) 방송제작 현장별 세트장 설치 및 해체, 고위험성 촬영 현장 등과 관련한 안전 점검 추진 및 점검 결과에 따른 맞춤교육(컨설팅) 진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트장 및 촬영 현장 별로 3회 내외 지원(설치 시, 완성 직후, 촬영 중) ○ (지원방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제작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작사에서 직접 섭외 후 이용 (단,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을 이용하여야 함) - 제작사 사용업체 섭외 ⇨ 협회로 견적서 제출 ⇨ 사용보고서 제출(사용 후 5일 이내) ⇨ 세금계산서 발행(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) ⇨ 사용료 지급(협회에서 업체로 직접 결제) ○ (지원조건) 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 결과보고서 의무 제출
II	응급의료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지원대상)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체 ○ (지원내용) 위험 요소가 많은 장면(폭파, 화재, 추격, 액션, 오지, 험지 등) 촬영 시 현장 응급의료(구조사 및 구급차)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급처치 및 환자의 중증도, 상해 내용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동 지원 ※ 작품 당 20회 내외 사용 가능(단,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됨)

※ 해당지역 응급환자 이송업체 또는 응급환자 설립허가를 받은 업체만 이용 가능

- 응급구조키트(구급상자) 등 배포
- (지원방법)
 -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위해 해당 지역의 응급환자이송업체* 직접 섭외 이용
 - 제작사 사용업체 섭외 ⇨ 협회로 견적서 제출 ⇨ 사용보고서 제출(사용 후 5일 이내)
 - ⇨ 세금계산서 발행(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) ⇨ 사용료 지급(협회에서 업체로 직접 결제)
- *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(제51조),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(별표3)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체(요건을 갖춘 시설 구비 및 구급차응급구조사 보유)
- (지원조건) 응급의료 사용에 대한 보고서(별도 양식 제공) 5일 이내 의무 제출

III **코로나19 방역 등 지원**

- (지원대상)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업체
- (지원내용) 세트장 및 로케이션 등 촬영 시 코로나19 전문 소독 및 방역 업체를 통한 촬영 전·후의 방역 지원
- ※ 작품 당 30회 내외 사용 가능(단, 예산이 조기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됨)
- ※ 해당 지역의 (코로나19)소독업신고 업체만 이용 가능
- (지원방법)
 - 지역별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상이하고,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제작 현장의 특성상 코로나 전문 소독방역 업체* 직접 섭외 이용
 - *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소독업신고업체(소독증명서 발급 필수)
 - 제작사 사용업체 섭외 ⇨ 협회로 견적서 제출 ⇨ 사용보고서 제출(사용 후 5일 이내)
 - ⇨ 세금계산서 발행(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) ⇨ 사용료 지급(협회에서 업체로 직접 결제)
- (지원조건) 전문 방역 사용에 대한 보고서(별도 양식 제공) 5일 이내 의무 제출

※ 최종 지원확정 통보(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) 이후 발생하는 사용분에 대해 지원

□ 신청서 접수기간

- 접수기간 : 2022. 3. 15 ~ 10. 30(*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
□ 신청방법
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에 한함
- 접수처 : sos@kodatv.or.kr
 - ※ 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(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)
-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서류	비고
1	사업신청서(수행계획서 포함)	표지 날인
2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서명
3	사업자등록증	
4	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	
5	4대 보험 완납증명서	

6	작품세부내용 (작품소개, 주요스태프, 촬영장소, 제작일정 등이 포함된 세부 내용)
---	--

- ※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정리 후, **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(파일명 : 업체명.zip)**
- ※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는 **반드시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(법인인감 포함)**
- ※ 서류 검토 및 진행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(관련 계약서 등)

□ 선정절차

- 신청서 접수일시 기준 우선순위 지원 결정
- 신청서류 검토 및 **적격 여부 확인***를 통해 예산범위내 최종 지원 확정
- *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,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기업 여부 등

□ 제외대상
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 - * (확인방법) 고용노동부 누리집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
- 신청일 현재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
- 기업의 4대 보험료 체납 기업

□ 유의사항

-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직인(날인) 및 서명이 없거나 미비된 서류 발생 시 무효 처리됨
-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, 관련법에 의거 지원금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
- 안전점검 및 교육, 응급의료지원, 코로나 방역지원 등 내용 및 수행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□ 문의처

-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(02-304-1119, sos@kodatv.or.kr)